

포레나 부산 덕천

당첨자 사전 자격확인 서류검수 안내문(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레나 부산 덕천에 청약하여 주시고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하신 내용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동법 제57조 8항에 의거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청약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아래의 제출기한 내 당첨유형별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자격확인 서류검수 일정

구분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방문 대상	101동 일반청약 및 특별공급 당첨자	102동 일반청약 및 특별공급 당첨자	103동 일반청약 및 특별공급 당첨자	104동 일반청약 및 특별공급 당첨자	105동 일반청약 및 특별공급 당첨자	106동 일반청약 및 특별공급 당첨자

■ 사전 자격확인 장소 및 유의사항

서류 검수 제출처	· 당사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8-6번지 / 문의전화 1899-0662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으로 모델하우스 방문 시간을 전화 예약 후 방문 으로 운영하오니, 필히 서류 검수 방문시간을 전화예약을 하셔야 하며, 미예약시 입장이 불가 합니다. · 사전 자격확인을 받지 않으신 당첨자는 당첨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도 서류검수 기간 내 방문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자격확인 서류검수 방문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No.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서류	1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2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본인 발행분)
	3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5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될 경우 제출
	6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7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8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청약신청지역 거주지역 확인용 - 모집공고일 기준(2020.02.28) 과거 1년 기간 지정 발급
	9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자격 서류	1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주소변동 포함, 직계존속 3년, 직계비속 1년)	
	1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1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14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개년도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개년도 발급)
	15		인감증명서	청약자
	16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의 경우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17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18	인장	대리인	· 서명 가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 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